

	규정	문서번호	TWP-A162
		제정일자	2011. 12. 09.
	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설치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5. 04. 27.
		개정번호	1
		페이지	1/6

## 목 차

- 제1장 종칙
-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
-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

부칙

별표

작성부서	시설과	제정일자	2011. 12. 09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	승 인
직 책	담당							총 장
서명								
일자								

 <b>동원대학교</b> <b>TONGWON UNIVERSITY</b>	<b>규정</b>	<b>문서번호</b>	<b>TWP-A162</b>
		<b>제정일자</b>	2011. 12. 09.
	<b>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설치 운영 규정</b>	<b>개정일자</b>	2015. 04. 27.
		<b>개정번호</b>	1
		<b>페이지</b>	2/6

	규정	문서번호	TWP-A162
		제정일자	2011. 12. 09.
	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설치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5. 04. 27.
		개정번호	1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) 동법시행령 제4조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·운영지침(이하“지침”이라 함) 규정에 의거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 내에 있는 CCTV 설치·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개인정보”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2. “처리”라 함은 컴퓨터·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·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·저장·편집·검색·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개인정보파일”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 물로서 자기테이프·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.
4. “처리정보”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.
5. “폐쇄회로 텔레비전”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·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① 이 대학교의 범죄예방·증거확보·시설안전·화재예방 등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·운영하는 CCTV와 이로서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  
 ② 이 대학교가 설치·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는 지침의 적용 여부에 대해 CCTV 운영기관이 판단한다.

**제4조(화상정보의 보호원칙)** ① 이 대학교는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
② 이 대학교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이 대학교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

	규정	문서번호	TWP-A162
		제정일자	2011. 12. 09.
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설치 운영 규정		개정일자	2015. 04. 27.
		개정번호	1
		페이지	4/6

한다.

④ 이 대학교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

**제5조(규정의 공고 등)** 이 대학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·운영 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하거나 “개인정보보호방침”에 포함하여야 한다.

**제6조(CCTV 설치현황)** 이 대학교 내의 CCTV설치현황 및 설치목적은 별표 1과 같다

**제7조(주관부서 및 운영 책임·담당자의 지정)** ① 이 대학교 내의 CCTV 운영 책임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.

1. CCTV 주관부서장: 사무처장
2. CCTV 운영책임자: 사무처 시설과장
3. CCTV 운영담당자: 사무처 전기담당

② 제1항에 따른 CCTV 주관부서장은 대학의 CCTV 설치·운영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·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 책임·담당자는 CCTV 설치·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8조(사전협의 및 의견수렴)**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**제9조(안내판의 설치 및 장소)** 이 대학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동원대학교 CCTV설치현황 및 설치목적을 참고하여 별표 2의 CCTV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

**제10조(수집의 제한)**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A162
		제정일자	2011. 12. 09.
	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설치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5. 04. 27.
		개정번호	1

**제11조(처리의 제한)** ① 이 대학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이 대학교는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녹화시간 및 녹화방법)** ① CCTV는 24시간 촬영하며, 촬영된 내용은 DVR로 저장한다.

② 녹화방법은 DVR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상태(움직임 감지시)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.

**제13조(열람 및 출입통제)** 폐쇄회로 녹화장소의 출입 및 녹화기기 작동은 운영책임관 및 그 실무담당자로 하며 출입제한이 곤란할 경우 시건장치를 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화상정보의 열람)** ① 정보주체가 개인화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.

1. 이 대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·화재 등의 용의자를 찾고자 하는 경우
2. 이 대학교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·사고의 증거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

②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며, 공익성의 저해 또는 제공으로 인해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 할 수 있다.

1.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무처에 방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상정보 열람 및 반출신청서를 작성한다.

2. 화상정보열람 여부는 총괄 책임자가 결정하며 열람이 제한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상정보 열람 및 반출 제한 결정서를 발급한다.

3. 주관부서장의 열람 허가를 받은 경우, 운영 담당자의 입회하에 개인화상 정보를 열람한다.

4. 주관부서장의 열람 제한 결정서를 받은 경우, 화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, 5일 이내에 경위서를 작성하여 열람을 재신청 할 수 있다.

5. 이 대학교는 화상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화상정보 열람 및 반출대장을 작성해야 한다.

③ 운영책임자는 주관부서장의 화상정보 허가를 받은 경우 청구인에게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다.

**제15조(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)** 이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

	규정	문서번호	TWP-A162
		제정일자	2011. 12. 09.
	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설치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5. 04. 27.
		개정번호	1

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
2.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

**제16조(보유 및 삭제)** ①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공간 내의 전자기록장치에 저장 및 보관하며 30일을 기준으로 녹화 삭제한다.

② 이 대학교는 필요시 수집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운영책임자에게 백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운영책임자는 보조기억장치(CD, USB, 외장하드, 디스크 등)에 해당 자료를 백업하여 보고한다.

1.

**제17조(교육)** 이 대학교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비밀유지의무)**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9조(관련문서)** 이 규정의 관련 문서는 다음과 같다.

1. 보안업무 규정
2. 정보보안·관리 규정
3. 학교시설물 사용 및 관리 규정

#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 동원대학교 CCTV 설치현황 및 설치목적

건물명	DVR 수	카메라별				설치목적	비고
		실내형 돔	옥외형 박스	기타	계		
대학본부 (본관동)	1	3			3	방범 및 시설관리	PC+ 모니터
공학관		3			3	방범 및 시설관리	
학생복지관		5			5	방범 및 시설관리	
새천년관		5			5	방범 및 시설관리	
인문사회관		11			11	방범 및 시설관리	
효암관		6				방범 및 시설관리	
기숙사	1	2				방범 및 시설관리	PC+ 모니터
정문	1		4			차량통행 제한 및 방범관리	본체+ 모니터
합계	3	35	4		39		

[별표 2]

## CCTV 안내판

(규격 : 가로: 26cm 세로: 14.5cm)

CCTV 작동중	
목 적	교내 출입, 시설관리, 화재 및 범죄 예방
촬영시간	24시간 연속촬영/녹화
촬영범위	CCTV가 설치된 주변
운영책임자	시설과장 (Tel. 760-0160)

[별지 제1호 서식]

화상정보 열람 및 반출 신청서

결재	계장	과장	차장	처장

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	<input type="checkbox"/> 반출	
신청자 인적사항			
신청인		열람 및 반출인	
성명		성명	
소속		소속	
주소		주소	
연락처		연락처	

이 대학교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설치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화상정보 열람 및 반출을 하고자 합니다.

- 다음 -

열람 및 반출 내용	
목적	
장소	
일시	

위와 같이 화상정보 열람 및 반출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)

동원대학교 귀중

\*동원대학교 CCTV설치운영 규정 제14조에 의해 화상정보 열람이 제한 될 경우 제한 결정서가 발부됩니다.

### [별지 제2호 서식]

## 화상정보 열람 및 반출 제한 결정서

귀하			
접수일자			
제한 내용			
제한 사유			
그 밖의 안내사항			
<p>[동원대학교 CCTV 설치 운영 규정] 제14조에 따라 청구하신 개인화상정보의 열람 및 반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열람 및 반출 제한 결정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경위서를 작성하여 열람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.</p>			
20	년	월	일
주관부서장 :		(서명)	

[별지 제3호 서식]

## 화상정보 열람 및 반출 대장